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1048      |
| 의 퇴 인 | 김선교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8. 16. |
| 추계번호  | 24A1364      |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공제료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0억 700만원, 2029년 80억 7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0억 3,300만원(연평균 80억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 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<br>(안 제24조의2) | 8,007 | 8,007 | 8,007 | 8,007 | 8,007 | 40,033 | 8,007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4조의2<br>(전통시장 화재공제<br>운영 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</li> <li>○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·지원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</li> </ul>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4조의2<br>(전통시장 화재공제<br>운영 지원) | ○    | —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금액으로 함
  -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 현황 및 미가입 사유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화재공제 가입점포 추정 규모에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비율과 화재공제 가입점포당 평균 공제료 금액을 곱하여 추계함
 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추정은 화재공제에 이미 가입한 점포 수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화재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 수의 합으로 추정함
    - ‘2022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2023년 12월)’에 따르면, 2022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점포 수는 232,206개이며, 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49.8%이고, 보험료 부담을 사유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11.2%
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사유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화재공제에 가입점포 비율은 61.0%로 추정할 수 있음
- 2022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화재공제 가입점포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는 141,542개이며, 이 규모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추정: 2022년 기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전통시장 점포 수 (개) (A)                     | 232,206 |
| 화재보험 가입 유형 (가입점포 수 대비 %)              | 100.0   |
| -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9.3    |
| - 민영 손해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0    |
| - 둘 다 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7     |
| 화재보험 가입점포 비율 (총 점포 수 대비 %) (B)        | 49.8    |
|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 (미가입점포 수 대비 %)            | 100.0   |
| - 필요성 못 느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7.5    |
| - 보험료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.2    |
| - 정보 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5     |
| - 보험제도 불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7    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1     |
| 보험료 부담이 사유인 화재보험 미가입 점포 (총 점포 수 대비 %) | 11.2    |
| 화재공제 가입점포 비율 추정 (총 점포 수 대비 %) (C)     | 61.0    |
|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추정 (개) (A×(B+C))          | 141,542 |

자료: '2022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(2023. 12월)'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료 지원 비율은 '농업인안전보험' 사례를 준용하여 50%로 가정함
  - '농업인안전보험'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에 근거하여 일반농에 대한 지원비율은 50%, 영세농에 대한 지원비율은 70%로 설정하고 있음
- 전통시장 점포 1개소당 연간 11.3만원의 화재공제 납입 공제료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연간 납입 공제료 금액의 평균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전통시장 화재공제 연간 평균 납입 공제료: 2020~2024년 7월

(단위: 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.7 | 연평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전통시장 화재공제 연간 평균 납입 공제료 | 10.8 | 11.5 | 12.1 | 11.4 | 10.7   | 11.3 |

자료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공제료를 지원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400억 3,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합 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<br>(안 제24조의2) | 8,007 | 8,007 | 8,007 | 8,007 | 8,007 | 40,033 | 8,007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‘2022년 전통시장·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’에 따른 가정과 유사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추계세제총괄과 | 신헌태 | 권아영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|
| 신헌태 | 02-6788-4653 | heontshin@assembly.go.kr |